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경화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외공관에서 경호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재관을 선발 시 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예외 근거 마련

- 1) 현행 법령상 재외공관 주재관은 직위공모 방식으로 선발
- 2) 외교부 직제 개정(2.25)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가 직제에 반영,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공모 방식 적용에 한계
 - 특히, 재외공관 경호업무는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로 최적임자 선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방식 적용 필요
 - * 해당 직위 주재관 선발 시 △ 사격능력, 체력 등 실기 평가가 필수적 △ 팀원 간 안정적인 팀워크 △ 정보수집·전술·폭발물·방호 등 팀원별 특기 균형적 안배 등 평가 필수적
- 3)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선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 요건에 최적의 직무과건자 선발이 가능

나. 주재관 선발 직급별 위원회 구성

- 1)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은 차관, 고위외무공무원, 타부처 고위공무원 3명, 민간인 3명 등 총 8명 이내로 구성
- 2)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고위공무원만으로 위촉이 가능한바, 고위공무원 주재관 선발이 아닌 경우 고위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선정*할 수 있게 근거 규정 마련
*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△ 4급(상당) 이하인 경우,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△ 5급(상당) 이하인 경우,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4급(과장급)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개정
- 3) 주재관 선발 시 직급별(고공단/비고공단)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선발 심사 위원 선정 등 주재관 선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

다. 동일부처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 제척요건 강화

- 1) 심사위원은 소속부처의 공무원이 지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나, 예외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해당 심사위원과 동일한 부처 소속인 경우 심사에 참여 가능
- 2) 해당 심사위원이 동일부처 지원자 중 특정 지원자와 친소관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, 주재관 선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부처 공무원 심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
- 3) 심사위원이 동일부처인 경우 예외 없이 주재관 선발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 주재관 선발의 공정성을 도모

라. 주재관 선발 재공고 요건 확대

- 1) 직위공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등에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규정
- 2) 지원철회 등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,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공고가 가능토록 개정하여 주재관 선발 절차에 있어 공정성 확보 기여

마. 주재관 근무기간 원칙 확립

- 1) 현 법령상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3년이며, 공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- 2)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한 근무기간 연장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주재관 근무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함에 따라 주재관 지원희망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 부작용 발생, 근무기간에 대한 원칙 확립 필요
- 3) 공관장 요청이 아닌 외교부장관이 긴급한 업무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기간 연장, 최대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주재관 근무기간 원칙을 확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3. 19. ~ 03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절차”로 한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분야(경호업무) 주재관 선발을 위해 직위공모 방식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직무와 직접”을 “직무와”로, “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”을 “장 및 재외공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무와 직접”을 “직무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직무와 직접”을 “직무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선발 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경우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, 5급 이하인 경우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4급(과장급) 이상

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 중 “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“면접심사 당일 결시자가 발생하여”를 “지원철회, 결시자가 발생 등으로”로, “있다고 위원회에서”를 “있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위원회에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위원회가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공고를 의결하는 경우

제10조 단서 중 “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”를 “긴급한 업무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 내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중 “직무와 직접”을 각각 “직무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주재관의 선발·임용) ① (생략) <신설>	제3조(주재관의 선발·임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분야(경호업무) 주재관 선발을 위해 직위공모 방식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	③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절차----- -----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4조(관계부처와의 협의)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(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재외공관의 장(이하 “공관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제4조(관계부처와의 협의) ① --- ----- ----- ----- 직 무와 ----- -- 장 및 재외공관의 장----- ----- ----- -----.
②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	② ----- 직무와 -----

런된 관계부처의 장 및 공관장은 선발대상 직위에 요구되는 직무전문성, 능력 및 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에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선발심사위원회는 선발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주재관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절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illegible]

제5조(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
구성) ① -----

----- 구성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직무와

<신 설>

⑦ (생략)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반기(半期)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이 소속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된 위원은 그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. 다만, 주재관으로 응모한 공무원들이 모두 해당 위원과 같은 부처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· ⑤ (생략)

⑦ 같은 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선발 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경우 9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일, 5급 이하인 경우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및 4급(과장급)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-----

----- 경우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. <단서 삭제>

④・⑤ (현행과 같음)

직무와 직접 관련된 관계부처의	-- 직무와 -----
장의 의견을 듣고, 해당 주재관	-----
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	-----
등을 고려한다.	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외교부 인사기획관	
연 락 처	(02) 2100 - 7153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